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대 등〉

■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931호)

2026. 3.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김 정 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대	5
2. 예외적 수의계약 체결 시 확인서 제출 및 내용 공개	21
※ 참고자료	24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권향엽의원 등 10인
2. 제안일 : 2026. 1. 9.
3. 회부일 : 2026. 1.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 사적이해관계자, 직무관련자 등과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직자에게 신고 및 회피, 기피의 신청, 거래 신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장이 현행법상 특수관계사업자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막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의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으로 확대하고, 수의계약 체결제한 대상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 공직자가 직무를 청렴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3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①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공직자 가족의 범위를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공직자(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¹⁾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함)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에서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는 공직자의 「민법」상²⁾ 친족까지 확대하고,³⁾
- ②이 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임에도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제출받고,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속 고위공직자
2. 해당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3.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4.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5. 해당 공공기관이 「국회법」 제37조에 따른 상임위원회의 소관인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담당하는 국회의원
6.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2)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1. 8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3)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공직자의 가족 범위를 확대함에 따라,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법 제12조제1항제8호), 그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법 제12조제1항제9호)의 범위도 함께 확대됨.

제1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illegible]

② (생 략) <u><신 설></u>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 ⑥ (생 략) ⑦ 신고자등과 그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또는 동거인은 신고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⑧·⑨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자 등의 보호·보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또는 ----- ----- ----- ----- ----- -----. 1. ~ 5. (현행과 같음) ⑧·⑨ (현행과 같음)
---	--

1.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대(직계존속·비속 등 → 「민법」상 친족 등)

□ 현행법은 공공기관⁴⁾(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⁵⁾를 포함함)이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상대방으로,

①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② 해당 공공기관의 계약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소속 공직자, ③ 해당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④ 해당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⑤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인 국회의원, ⑥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이하 ①부터 ⑥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라 함),

⑦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⁶⁾),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 기관

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행정기관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국립·공립 학교

5) 회사(모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그 다른 회사(자회사)를 의미함.

* 「상법」 제342조의2(자회사에 의한 모회사주식의 취득) ①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회사(이하 “母會社”라 한다)의 주식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다른 회사(이하 “子會社”라 한다)가 이를 취득할 수 없다. <각 호 생략>

6) 이하 “가족”이라고만 할 경우,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아닌 일반적 의미의 가족을 칭하는 것임.

⑧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⑨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 및 그 가족이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⁷⁾(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법인 등)로 정하고 있음.

[표 1] 현행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유형		제한 대상
공직자	직무 관련성	·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해당 공공기관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자회사의 모회사인 공공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 공공기관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인 국회의원 · 공공기관을 감사·조사하는 지방의회의원
가족	인적관계	· 공직자 본인,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직계혈족(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한정)
법인·단체	경제적 이해관계	· 공직자 및 그 가족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 · 공직자 및 그 가족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자본금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7) “특수관계사업자”란 공직자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포함)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함.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 3. (생략)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2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2.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3. 공직자 자신, 배우자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그런데, 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적이해관계자⁸⁾에는 해당하지만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하
여는 현행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현행법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를 「민법」 제
779조에 따른 가족⁹⁾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는 이보다 좁게 정하고 있어,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직자의 형제자매 등이나 그 형제자매 등이 대표자
· 특수관계사업자 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에는 해당하지만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는 해당
하지 않게 됨.

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사적이해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대표자·관리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공직자 자신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
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 전 2년 이내에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

아. 그 밖에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되는 자로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
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9)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표 2] 현행법에 따른 행위별 제한 대상 가족 범위

구분	행위별 제한 대상 가족 범위	
사적 이해관계자 신고 (§2, §5)	-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혈족* - 공직자의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가족채용 제한 (§11)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직무 관련자와의 거래신고 (§9)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공직자의 직계혈족	
수의계약 체결 제한 (§12)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6)	- 공직자 본인,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공직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 직계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의미함.¹⁰⁾

** 음영은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되는 가족을 의미함.

*** 음영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범위를 의미함.

자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업무편람」(2025), 국민권익위원회, p. 262. 재구성

10) 「민법」 제768조(혈족의 정의)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

□ 이에,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제한을 받는 공직자의 가족 범위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까지 확대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되는 가족 중 혈족의 범위는 현행 공직자의 직계혈족(직계존속·직계비속)에서 8촌 이내의 혈족으로, 인척의 범위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직계존속·직계비속)에서 해당 공직자와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각각 확대되는 것으로, 이는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범위인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보다 넓은 개념임.

[표 3] 현행법 및 개정안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

구분	현행	개정안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사적이해관계자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공직자의 배우자	좌동	좌동
혈족	공직자의 직계혈족	좌동	좌동
	-	8촌 이내 혈족	공직자의 형제·자매
인척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좌동	좌동
	-	4촌 이내 인척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개정안은 공직자와 관련된 인적 이해관계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수의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공기관과 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계약에 개입하는 것을 보다 엄격히 차단하려는 것으로,
공직자가 수의계약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면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체결 과정의 공정성과 이행과정의 적정성 확보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현행법이 제정·시행(2022. 5. 19. 시행)된 이후에도, 공직자가
자신의 조카 또는 형제자매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례¹¹⁾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 일응 수긍할 수 있는
측면이 있음.

○ 특히,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수행을 위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그 특성상 공공성이 높고, 계약의 적정한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다면 그 피해가 불특정 다수에게 전가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예산
낭용의 우려도 있으므로,

계약 상대방으로 적절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 보다 엄격한
계약질서를 요구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11) <조카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 및 형이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

“이번엔 시의원 형 업체... 홍보물 수의계약”, JTV뉴스, 2025. 8. 1.

<형제자매가 운영하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사례>

“형제자매 회사는 규제 밖... 11대 서울시의회 들어 수의계약 급증”, 서울일보, 2026. 1. 28.

□ 다만, 개정안은 공직자의 「민법」상 친족과 그 친족이 대표자로 있거나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까지 수의계약 체결 금지 대상으로 하려는 것인바, 제한 대상의 확대 및 확대하려는 제한 대상의 범위가 적절한지와 관련하여서는, ①동 제도의 취지, 가족관계에 대한 시대적·환경적 변화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제정 당시의 논의, ②확대되는 범위에 따른 제도의 실효성·운영 효율성 확보 측면, ③관련 입법례의 규정 취지 및 규율 대상 범위 등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동 법 제정 당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의 범위를 현행과 같이 규정한 것은,

동 조항이 공직자가 경제적 공동체에 있는 자와의 거래를 금지함으로써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과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은 사인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측면¹²⁾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대적·환경적 변화에 따른 가족관계의 관념·형태 및 생활상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공직자의 경제활동과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인적 관계의 범위로 한정하였던 것으로,¹³⁾

개정안과 같이, 제한 대상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12)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는 공공기관에는 「상법」상 주식회사도 포함되고, 공공기관의 계약 상대방이 되는 법인 또는 단체의 경제활동이 제약되는 측면도 있음.

13) 제21대국회 제386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3차(2021. 4. 13.) 회의록 및 제4차(2021. 4. 14.) 회의록, 국민‘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자료’, 2021. 6. 등 참조.

같은 관련 요소들을 고려함과 함께 제정 당시 논의 경과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화·도시화 및 교통·통신의 발달로 전국적 인구이동과 도시집중 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가족관계의 형태와 가족에 대한 관념도 전통적 가족관계에서 핵가족화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친족 사이 왕래의 현저한 감소와 친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도의 신분공시제도의 불비는 상대적으로 촌수가 먼 친족의 경우에는 혈족관계의 존재를 알기 어렵게 되었음. 이에 따라, 친족 사이에서는 언제나 경제적 이해관계가 공유될 수 있다거나 친족 사이의 친밀감·유대감 및 신뢰관계가 일률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관념도 변화하게 되었음.¹⁴⁾
- 동 조항은 공직자 본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가족의 범위를 정하는데 있어, 이러한 산업구조·사회문화, 시대 구성원들의 생활양식 변화 등에 따른 현대 가족관계의 형태·관념을 고려한 것이고,
- 아울러, 공공기관이 당사자가 되어 체결하는 수의계약도 사경제의 주체로서 체결하는 사법상 계약으로서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 원칙이 적용되고, 동 조항으로 인하여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받게 되는 대상자(계약 상대방)의 직업의 자유가 제한받게 된다는 측면에서,

14)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결정 중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재판관 4인의 반대의견 및 헌법재판소 2024. 6. 27. 선고 2020헌마468 등 결정[「형법」 제328조제1항 등 위헌확인(친족상도례(형면제)사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토론회(2019. 3. 12.), 청렴사회민관협의회·국민권익위원회, 토론회 자료 등 참조.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대상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규정한다면 과잉입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하였기 때문이다.¹⁵⁾

- 다만,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직계혈족에 대하여는 연락 가능성을 고려하여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를 불문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 「민법」상 가족 또는 공직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 등 입법취지 달성을 위해서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범위를 현행 규정(당시 정부안)보다 확대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의견¹⁶⁾도 있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회·문화 변화를 고려하고, 동 조항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직자의 청렴성·공정성 등의 가치와 함께 개인의 경제 활동 등 사적 영역의 제한 정도를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규제의 실효성 확보와 제도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어떠한 규제 제도가 도입되거나 그 규제의 영역을 확대하려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효성 확보 방안이나 운영 효율성 담보 방안에 대하여도 고려되어야 할 것인데,

이와 관련하여, 일정한 가족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하여 행위 제한을

15) 제21대국회 제386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3차(2021. 4. 13.) 회의록 및 제4차(2021. 4. 14.) 회의록; 국민권익위원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설명자료’, 2021. 6. 등 참조.

16) 제21대국회 제385회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21. 3. 17.) 회의록(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관한 공청회), 제21대국회 제386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제3차(2021. 4. 13.) 회의록 및 제4차(2021. 4. 14.) 회의록 등 참조.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가족관계의 확인방법과 이에 투입되는 행정비용 등 제도의 실효성 확보 수단과 운영의 효율성 측면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현행법령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수의계약 체결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¹⁷⁾

이에 각 기관은 제도 운영지침에서 그 확인의 방법으로, 계약 업무 담당자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그 계약의 상대방에게 ‘수의 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자료를 참고하여 수의계약 제한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¹⁸⁾¹⁹⁾

- 그런데,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는 계약 상대방이 제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작성자인 계약 상대방의 인식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데, 계약 당사자인 공공기관과 상대방이 해당 공직자가 계약 상대방의 친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낮은 현실에서 확인서 제출을 통하여 제한

17)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8)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별지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1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식에 대하여는 [참고](p.24) 참조.

대상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고위공직자 재산공개도 본인,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혈족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²⁰⁾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공시제도 등을 통하여서는 공공기관의 장이 수의계약 체결 상대방의 친족관계 전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호주제 및 舊 「호적법」 폐지(2008. 1. 1.) 이후, 8촌 이내 방계혈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부계 및 모계 친족의 본적지를 일일이 확인하여 해당 관청에서 친족의 제적등본을 열람·대조하는 것 이외 별다른 증명방법이 존재하지 않는 것²¹⁾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친족으로 규정할 경우, 현행 신분공시 제도 및 기타 참고자료 등으로 제한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실효적인 수단이 확보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같은 맥락에서, 공공기관의 장이 수의계약 체결 상대방의 친족관계를 확인하기에는 상당한 행정력이 소모될 것으로 예상되고,
공직자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에 대한 징계, 과태료 등의 제재규정²²⁾을 두고 있다는

20) 「공직자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각 호 생략 >

21)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8헌바115결정 중 8촌 이내 혈족 사이에서 혼인을 금지하고 있는 「민법」 제809조제1항에 대한 재판관 4인의 반대이견.

관련하여, 위 반대이견에서 재판관 4인은 8촌 이내의 방계혈족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혼인의 상대방을 결정하여야 한다면 이는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호주제 및 호적제도를 폐지한 취지와 모순된다고 판단하였음.

2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6조(징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점에서, 계약 담당자가 이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주의의무가 요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직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따라서, 제한 대상 확대 범위의 적절성과 관련하여서는, 그 취지와 함께 제도의 실효성 및 효율성 측면도 고려하여 논의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셋째, 우리 법령은 공익 달성을 이유로 일정한 행위 제한을 받는 가족의 범위 또는 본인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다고 보는 가족 범위를 정하고 있는 입법례가 다수 있는데, 법 전반의 체계적 정합성 측면에서, 수의계약 체결 행위를 제한하는 공직자 가족 범위의 적절성 판단에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및 규율 내용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동 법 제정 이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舊 「공무원 행동강령」²³⁾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²⁴⁾에 따라 규율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유도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

23) 舊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2022. 6. 2. 삭제) **제5조의5(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고위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기관, 그 기관의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그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2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입찰 및 계약체결의 제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되고 있었는데, 각 법령은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민법」상 가족으로 정하거나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으로 규정하여, 현행법보다 넓은 범위로 정하고 있었음.

[표 4]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가족 범위 입법례

법령명	제한 대상 범위
舊 「공무원 행동강령」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배우자 · 본인의 직계혈족 ·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 무관)

* ■ 음영은 현행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의 범위를 의미함.

- 또한, 현행법은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가족채용 제한은 「민법」상 가족으로 가장 넓게 규정하였고,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와 수의계약 체결 제한은 경제활동과 관련된 행위라는 점을 고려하여 배우자, 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목적으로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배우자
2.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4.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
 - 나.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으로서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6.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제1호·제3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7.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의원과 제2호·제4호·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

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포함)으로 좁혀서 규정하였으며,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경우
그 거래관계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직자의 직계혈족도 생계를
같이 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여 가장 좁게 규정하는 등²⁵⁾
각 조항이 규제하는 영역의 성격 및 취지를 고려하여, 행위별로
제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를 다르게 정하였음.

- 한편, 공익 달성을 이유로 본인의 가족에 대하여 행위 제한을 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재산등록 시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모계혈족(외조부모, 외손자녀 등)은 제외]의
재산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법」,²⁶⁾
본인과 경제적 연관관계를 가지는 자에 준하여 가족 간 거래를
일반적 거래행위와 다르게 취급하기 위해 가족관계(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²⁷⁾²⁸⁾

25) 각 행위별 제한 대상이 되는 가족의 범위의 구체적 내용에 대하여는 앞선 [표 2](p. 8) 참조.

26) 「**공직자 윤리법**」 제10조(등록재산의 공개)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관할 등록의무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및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의 재산에 관한 등록사항과 제6조에 따른 변동사항 신고내용을 등록기간 또는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관보(공보를 포함한다) 및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각 호 생략 >

27)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세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국세기본법**」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0호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4촌 이내의 혈족

2. 3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4. 5. (생 략)

가족을 통한 우회적 금품 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공직선거법」²⁹⁾ 등이 있으며,³⁰⁾

각 규정은 그 제한의 취지 및 규율 영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행위 제한을 받는 가족의 범위를 각각 다르게 정하고 있음.

[표 5] 행위 제한을 받는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입법례

법률명	내용	취지	적용 가족 범위
공직자윤리법	재산등록 (§4)	재산등록을 통한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및 공직자 윤리확립	· 배우자, 본인의 직계혈족 (모계혈족, 혼인한 직계 비속 여성 제외)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특수관계인 (§2)	가족 간 ‘봐주기’ 거래 등을 통한 부당한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 형평성 확보	· 배우자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공직선거법	기부 행위 제한 (§114)	가족을 통한 우회적 금품 제공 등 금권선거 방지 및 선거 공정성 확보	· 배우자 (§113)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형제자매 · 본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 자매의 배우자

자료: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을 위한 토론회(2019. 3. 12.) 자료(청렴사회민관협의회·국민권익위원회), p. 27 재구성

28)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의 범위에 관하여는 종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에서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개정(2023. 2. 28. 일부개정)된 바 있음.

29)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 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정당[「정당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당원협의회(이하 “당원협의회”라 한다)와 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정당선거사무소의 소장,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나 후보자 또는 그 가족(가족의 범위는 제10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후보자의 가족”을 준용한다)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이하 “회사 등”이라 한다) 또는 그 임·직원은 선거기간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이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로 본다.

30) 다만, 공적 업무 수행에 따른 이해관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민법」 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직무 수행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 공직자 본인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입법례에는 법관, 심판관, 위원회위원의 제척 관련 규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군인사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기업도시 개발 특별법」,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등.

- 그 밖에, 개정안의 체계·자구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법 제12조제1항 제9호에 따른 “특수관계사업자”의 정의를 같은 법 제9조에서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정하고 있으므로,³¹⁾ 개정안과 같이, 특수관계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가족 관계의 범위를 넓히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12조에서 제9조와 별도로 “특수관계사업자”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공공기관과 계약 상대방의 인지도 가능성,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행정력 요구 등에 비추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3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각 호 생략 >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공공기관(공공기관으로부터 출연금·보조금 등을 받거나 법령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는 산하 공공기관과 「상법」 제342조의2에 따른 자회사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관계된 특수관계사업자

2. 예외적 수의계약 체결 시 확인서 제출 및 내용 공개

□ 현행법은 공공기관과의 수의계약 체결을 제한하는 계약 상대방을 정하고 있으나,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그 제한 대상 여부의 확인 등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동 법 시행령에서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³²⁾ 각 기관의 운영지침은 그 제한 여부 확인의 방법으로, 계약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하고 있음.³³⁾

□ 개정안은, 현행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여부에 관한 확인의무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그 확인서의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확인서 제출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수의계약 체결 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다만,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함) 제출

3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1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②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33)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국민권익위원회 예규) 제11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
①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 [별지 14]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사항, 겸직신고 사항, 기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대상을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와 같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데,³⁴⁾

확인서³⁵⁾ 제출은 공공기관의 계약 업무 담당자가 수의계약 상대방이 현행법에 따른 제한을 받는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기 위하여 수의계약 체결 전 모든 계약 상대방에게 제출받아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현행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로 한정하는 방식이 아닌 일반적인 제출의무를 규정하는 방식³⁶⁾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³⁷⁾

□ 또한, ‘확인서 내용의 공개’ 부분과 관련하여서는,

확인서 내용 공개로 인하여 일반에 공개되는 사항인 계약 상대방의 가족관계도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에서,³⁸⁾ 확인서 내용 공개는 개인의 자기정보결정권을 제한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확인서 내용 공개로 달성되는 공익인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부패

34) **안 제12조제3항** “공공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를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구나 볼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1항 단서 “.....다만,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5) 개정안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 확인서’는 현행 제도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와 동일한 의미로 이해됨.

36) “공공기관은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와 같은 방식을 의미함.

37) 개정안과 같이 규정될 경우, 공공기관이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만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임.

38) 헌법재판소 2022. 11. 24. 선고 2021헌마130 결정 및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안내자료* 참조.

* 개인정보의 구체적인 예: 신분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본적, 가족관계, 본관 등

행위 발생 가능성의 차단과 이로 인하여 제한되는 개인의 기본권과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의 정도 등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공익 달성을 위하여 본인과 특정한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입법례로는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³⁹⁾과 「사립학교법」⁴⁰⁾이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안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변호사법」,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서 보호되는 사항을 검토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2

39)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친족 등 채용사실의 신고 및 공개) ① 국회의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거나 「민법」
제777조의 친족 중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좌직원 임용을 요청하는 경
우에는 국회사무총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국회사무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국회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
개하여야 한다.

* <공개 예시>

소속의원 (성명)	보좌직원 (성명)	소속의원과의 관계	근거조문
(의원 실명)의원실	민○○	5~8촌까지의 혈족	「국회의원의 보좌직원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40) 「사립학교법」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공개 예시>

학교법인 임원 성명	교직원 성명	학교법인 임원과의 관계
(임원 실명)	박○○	2촌(동생)

참 고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서식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자	발주내용	[] 공사 [] 용역 [] 물품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개인 [] 법인 [] 단체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⑦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⑧	①부터 ⑥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①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③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예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⑧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관·법인·단체명)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